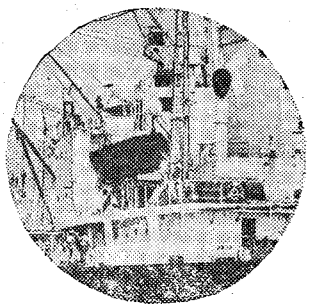

食品工業育成法胎動에 提言

尹章奎 (經濟評論家)

1. 食品工業 育成法의 胎動

①高度의 生活必需品으로 ②그리고 輸出增進의 役軍이며 ③또 食糧節約의 工業인 食品工業이 政策上의 育成對象業種에서 除外되어 있는 것은 理解하기 어려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생각컨대 우리나라에 있어서 食品工業이 日帝統治下에서 早期上陸을 하였으나 그 內容인즉 극히 좁은 범위의 食品工業이면서도 사탕' 과자등의 消費性一邊倒의 加工食品을 생산 하는데 그쳤다. 다만 2次大戰단계에 들어선후에는 軍需관계로 工業食品의 테두리가 넓어지고 一部 韓國人이 生産에 參與한 例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前의 상황은 商人을 主로 하는 日本人들이 한국사람의 消費支出을 긁어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擇해진 加工食品의 生産 販賣이었다.

이래서 우리의 加工食品에 대한 先入感은 좋지 못하였고, 加工食品은 消費商品으로 常識上 規定 지워졌었다. 8·15후 오늘날까지 食品工業이 消費産業視 당해왔고 政府의 育成政策圈外의 存在化한 原因이 따지고 보면 이러한 우리나라 食品工業史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食品工業에 대한 施策意識이 바뀌져서 政策으로 育成하게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國會一角에서 食品工業 育成法案의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고 傳해져 있는 사실이 그를 말해 주고 있다.

食品工業의 育成을 위한 法案을 신속히 만들어 國會에서 通過무난이 되게끔 하여 最短期日內에 실시 되게끔 하려는 것이 관계자의 목표라고 報道되어 있다. 그러나 晩時之難이 있기는 할 망정 食品工業을 制度上으로 育成하는 기

틀을 마련하기로 方針이 定해진 것은 歡迎되어 마땅하다. 또 관계자가 熱意있게 法案의 國會提出을 촉진 시킨다면 머지않아 國會의 通過를 보게 될 것을 期待할 수 있을 것 같다.

요는 어떠한 內容의 育成法이 立法되느냐에 業界는 물론 一般의 관심이 또한 커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數千種이라고 일컬어 지는 製品의 多樣性을 지니고 있는 加工食品인데다가 라면·빵등의 主食代替品, 調味料, 淸凉飮料등등이 모두 食生活品인 때문이다. 그리고 賣出伸張率이 異例的으로 높은 加工食品이란데도 그 理由가 있는 것 같다. 業界·學界·硏究機關중에서 法案에 담아질 만한 귀중한 參考資料가 提示됨직 하거니와 특히 業界에서는 待望의 「育成의 制度化」를 앞두고 業界의 要望하는 바의 焦點이 무엇인가 또 食品工業界의 長期的인 發展「비젼」이 국민 食生活의 內外推移를 뒷받침하는 감각에서 어떻게 育成法에 反映되어야 할 것인가 등을 具體的으로 硏究, 整理해야 할 契機일 상 싶다.

2. 食品工業 中心의 3位 1體

食生活의 改善이 國家政策的, 國民經濟的 그리고 生活의 科學化및 能率化 등등의 見地에서 국제·국내적으로 重要課題化 한 것은 오래 前부터의 일이다.

그런데 農水產部의 「76年度 糧穀소비分析」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의 食生活 改善은 本格的인 「코오스」에 들어선 것을 알 수 있다. 쌀·보리쌀 등의 소비가 감소되고 상대적으로 밀가루와 밀가루제품(라면), 쇠고기등의 수요는 늘어난 것이다.

이를 數字的으로 본다면 쌀의 年間 1人當 소비가 120.1kg로서 75年, 123.6kg보다 3.5kg(2.8%)이 줄었고 보리쌀이 34.7kg인데 75年의 36.3kg에 比해서 1.6kg(4.4%)나 감소하였다.

그런가 하면 밀가루가 4.4kg으로서 전년의 4.1kg보다 0.3kg(7.3%), 쇠고기는 2.13kg인데 7%, 돼지고기가 2.95kg으로서 5.4%가 각각 增加하였다. 그리고 라면의 경우는 34.8%란 可驚할만한 激增이고 우유도 20%의 高率增加이다.

이와같이 穀物과 肉類등의 「소비패턴」이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국민 食生活改善이란 숙원이 풀리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동시에 국민소득수준이 향상하였다는 사실의 立證이기도 하다. 粉食을 장려한 정부시책에 힘입은 바 크지만 식품공업이 近代化하여 국민嗜好에 맞출수 있음에도 緣由한 분식의 「대중식사화」이다.

뿐만 아니라 食品工業의 발전은 畜產業의 급격한 伸張을 통해서 農民의 所得增大에 寄與한 바 甚大하였음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이는 食品工業이 肉類의 需要增進과 表裏一體의 聯關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食品工業의 발전없이는 畜產增强이 不可能하다. 그러나 國民의 所得增大가 이를 뒷받침 하지 않는다면 畜產발전이 根本的인 沮害를 당하게 마련인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국민의 肉類소비량이 늘어날 수 없기에 말이다.

다만 여기에서 또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畜產增强과 食糧소비 增大의 마찰관계이다. 畜產이 발전됨에 따라서 그만큼 穀物소비가 늘어난다면 食品工業의 重要使命의 하나인 糧穀소비량이 줄고 肉類소비량이 增加되는 것은 加工食品의 生產需要로도 많은 肉類를 소비하기 때문이다. 畜產物의 成長에 있어서 穀類飼料依存度가 높을때엔 결과적으로 食事用(라면,

빵 以外의 것) 糧穀소비가 줄어들 뿐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때문에 食品工業의 발전—肉類消費增大—전체食糧의 소비절약이라는 效果를 거두자면 草食畜産및 其他의 方法으로 「非穀飼料의 畜産」을 體制化하여야 하겠다.

畜種에 따라서 飼料에 의한 糧穀소비율이 다르지만 肉類産出量에 比해서 엄청난 倍數의 食糧을 소비하는 것이 있기도 하므로 「非穀飼料」의 硏究開發에 최대의 積極性을 關係官民이 모두 보여야 한다.

3. 企業에 대한 새로운 政策感覺

4次 經濟開發5個年계획의 特色中의 하나는 社會開發에 顯著하게 開發力點을 두게된 點이다. 그 실제를 1次年度인 77年度의 豫算構造에서도 볼 수 있다.

즉 77年度 一般會計 歲出豫算중의 社會開發예산이 5천6백 33億원으로서 前年度에 比해 21.2%가 늘어난데 反해서 經濟開發예산은 前年보다 4.1%가 줄어진 5천5백 20億원으로서 金額面으로도 社會開發費보다 112億원이나 적다.

周知하는바와 같이 政策上의 開發順位가 「先經濟·後社會」로 되어있어 76年까지는 社會開發費의 豫算上 比重이 經濟開發費에 겨누어서 크게 比較劣位를 甘受하여야 했었다. 그러나 1차經濟開發계획이후 3차를 거듭한 5개년계획이 國際異例의 경제성장을 경과하였으므로 이제는 社會開發에 政策意慾이 쏠릴수 있게 되었고 또 쏠리고도 있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政府豫算上 經濟開發 예산보다 社會開發예산이 더 많은 金額이란 과거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고 경제개발예산규모를 前年度보다 4.1%나 줄인 理由가 社會開發費를 늘리기 위함이었음을 짐작이 가는 일이다.

또 이렇게 社會·經濟開發豫算의 比重이 자리바꿈을한 사실은 經濟開發의 豫算依存度가 낮아져도 좋게끔 된것과 지금까지 社會開發이 比較落後된것을 同時立證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같은 豫算構造의 變化는 企業人들에게 새로운 課題를 負荷시켰다는 點을 잊지 않는 企業人들이어야 할것 같다. 왜냐하면 社會開發이란 원래 財政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民間의 社會開發을 誘導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財政의 限界線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社會開發은 범위가 廣範多樣하지만 그대상의 一部인 福祉增進의 적지않은 面이 企業人에 의해서 앞으로 開拓되어야 하게 마련인 우리의 實情이다.

例를 들자면 失業·疾患·老後에 대한 社會保障制度등 財政負擔에 歸屬되어야 할 性質과 部分의 것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때문에 企業體가 그 業體從事員의 福祉向上에 만이라도 政府財政活動에 앞서서 힘겨울 (財務構造로 보아서)정도의 負擔을 해야만 할 狀況인 것이다.

이와같은 흐름은 食品工業界의 경우에 상당이 刺戟的일 수 밖에없다.

즉 從事員 300名이상의 企業體가 유수企業體의 大多數인 때문에 福祉施設및 運營費, 醫療관계, 나아가서는 財形貯蓄의 企業부담 部分및 其他에 걸쳐 社會開發時代를 가는 企業支出이 經常性 支出을 主로해서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을 뿐이다.

한편 企業業務面으로는 企業倫理의 壓力, 外國技術의 追求難, 國際化, 大型化의 要競爭 마아케팅時代의 激流 그리고 輸出業體의 경우

는 開途國에의 輸出增進을 꾀하자면 그나라의 傳統的인 食生活 文化 까지를 硏究하여 開發 新製品에 傳統의 향기를 담는 努力도 必要해 진다.

한마디로 말해서 企業人은 돈 벌기에 能하면 足하였던 時代가 이미 지나가고 社會的責任만이 부쩍 무거워 졌다.

이것은 政策感覺이 새로운 角度에서 企業과 企業人에 대한 價値判斷의 基準을 再定立해야 할 때가 온 것을 뜻하는 것이 기도 할상싶다.

또 한가지 附書하여야 할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企業이 새로운 轉換을 하지않으면 안되게된 단계에 到達한 사실이다.

즉 企業의 國際化, 大型化 그리고 名實상부한 企業의 民間主導態勢의 整備作業 開始등도 그 主要事例들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자면 貿易自由化時代가 흔들리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經濟의 開放을 계속 强化하여야 한다는 方向固守란 大原則은 더욱 굳혀가려는 것이 自由經濟 國家들의 共通된 主張이고 努力이다. 우리企業이 國際規模(水準)로 改編, 大型化 돼야할 理由는 이래서 明確한 것이다.

또 企業의 民間主導化가 提高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아니지만 民間主導로 移行하지 않아서는 안될 만큼 우리企業이 엄청나게 커졌다.

지금까지와 같이 政府가 이를 主導하기는 너무도 힘겨운 存在로 化해진 것이다.

때문에 民間主導를 名實상부케할 自體整備가 企業界의 새課題의 하나로 등장되었다.

案 內

韓國食品工業協會에서는 食品工業의 發展과 技術開發을 爲하여 硏究 努力하시는 學界重鎭 및 學生, 食品分野에 從事하고 있는 많은 人士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食品工業誌를 비롯 食品衛生法規 食品添加物의 規格 및 基準, 食品 添加物의 生產實績 보고서 등을 발간, 배부하고 있읍니다.

本協會가 發刊한 各種 食品 관계 刊行物의 購讀을 希望하시면 製作實費(印刷費·用紙代·우송료)만 받고 供給하겠아오니 아래 要領에 의해 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① **食品工業誌** : 本文 110페이지 以內로 年 6回 發行하고 있으며 內容은 국내 食品工業의 動靜과 敎授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執筆한 硏究論文이 收錄됨. (구독료 1년분 1,200원)

② **食品衛生法規** : 食品衛生法을 비롯 施行令, 施行規則, 行政處分基準등을 망라. (價格 500원)

③ **食品·添加物의 規格및基準** : 保健社會部가 1977년 2월 14일자로 告示한 現行 255種의 食品添加物과 75種의 食品等의 規格 및 基準을 單行本(本文 540페이지)으로 集大成하여 發行, (價格 3,000원)

④ **食品·添加物 生產實績 報告書양식** : 食品製造業所가 食品衛生法 第19條의 2 第2條 및 동법 施行規則 第29條 第2項의 규정에 의해 관계 당국에 報告해야 되는 보고서 양식. (卷當100枚. 3,000원)

購讀申請場所 : 本協會(서울 特別市 中區 忠武路 4街 125-1. 進洋아파트 610號)로 直接오시거나 書面으로 申請해 주십시오.

代金納付方法 :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서 對替口座(**計座番號 610501**)를 이용하시거나 本 協會로 直接納付하시면 됩니다.

1977年 8月 日

社團法人 韓國食品工業協會